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일반 사법기관과의 협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방 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부 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방부에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의 과장 직위를 영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정규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군무원채용팀을 신설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며,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6일까지에서 2026년 5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교육훈련정책과장”을 “교육훈련정책과장·정신전력정책과장”으로, “정신전력정책과장·국제정책과장”을 “국제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군무원정책과·동원기획과”를 “군무원정책과·군무원채용팀·동원기획과”로, “감염병대응팀”을 “감염병대응팀”으로, “감염병대응팀장”을 “군무원채용팀장 및 감염병대응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군무원채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무원 채용 및 전직시험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군무원 채용제도의 연구·발전
3. 군무원 채용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4. 전시 군무원 채용계획 수립·조정
5. 군무원 채용 현황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항 본문 중 “국방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국방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명(5급 2명)”을 “3명(5급 2명, 8급 1

명)”으로 한다.

제20조의7제1항 중 “영관급장교로”를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672”를 “674”로 하고, 일반직 계 “664”를 “666”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을 “35”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방호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3”을 “215”로, 행정주사·사서주사·방호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3”을 “16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74”를 “677”로 하고, 일반직 계 “666”을 “66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을 “35”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방호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5”를 “217”로, 행정주사·사서주사·방호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

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3”을 “164”로 ,
 행정서기·방호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위생서기 “54”를 “55”로 한다.

별표 6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무인복합체계과(존속기한: 2025년 7월 25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 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

별표 7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3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 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 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 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국방부령 제108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
 칙 제2조제2항 중 “2024년 5월 6일”을 “2026년 5월 6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군무원채용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군무원채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군무원채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군무원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⑤ (생략)

⑥ 인사복지실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 인력정책과 · 병영정책과 · 인적자원개발과 · 군종정책과 · 군무원정책과 · 동원기획과 · 자원동원과 · 예비전력과 · 복지정책과 · 국방일자리정책과 · 보건정책과 · 군인연금과 · 군인재해보상과 및 감염병대응팀를 두며, 인사기획관리과장 · 병영정책과장 · 군종정책과장 · 예비전력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정책과장 · 인적자원개발과장 · 군무원정책과장 · 동원기획과장 · 자원동원과장 · 국방일자리정책과장 · 보건정책과장 · 군인연금과장 및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염병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군무원정책과 · 군무원채용
팀 · 동원기획과-----

-----감염병대응팀

--- 군무원채용팀장 및 감염병
대응팀장-----

관으로 보한다.

⑦ ~ ⑪ (생략)

⑫ 군무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군무원 임용시험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 10. (생략)

<신설>

⑭ ~ ⑳ (생략)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국방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

⑦ ~ ⑪ (현행과 같음)

⑫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 10. (현행과 같음)

⑬ 군무원채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무원 채용 및 전직시험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군무원 채용제도의 연구·발전

3. 군무원 채용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4. 전시 군무원 채용계획 수립·조정

5. 군무원 채용 현황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⑭ ~ ⑳ (현행과 같음)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국방부-----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제20조의7(유무인복합체계과) ①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생략)

제21조(한시정원) ① (생략)

<신설>

③ (생략)

--. -----

----- 3명(5급 2명,
8급 1명)-----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7(유무인복합체계과) ① ----- 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③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108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종전의 국방부령 제98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병영문화혁신팀을 제외한 디지털소통팀은 <u>2024년 5월 6일</u>까지 존속한다. ③ (생략)	국방부령 제108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2026년 5월 6일</u> -----.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2</u>	<u>674</u>	+2
·	·	·	
·	·	·	
일반직 계	<u>664</u>	<u>666</u>	+2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36</u>	<u>35</u>	-1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방호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 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 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 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213</u>	<u>215</u>	+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방호 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 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163</u>	<u>164</u>	+1
·	·	·	
·	·	·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4</u>	<u>677</u>	+3
·	·	·	
·	·	·	
일반직 계	<u>666</u>	<u>669</u>	+3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36</u>	<u>35</u>	-1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방호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 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 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 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215</u>	<u>217</u>	+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방호 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 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	<u>163</u> ·	<u>164</u> ·	+1
행정서기 · 방호서기 · 공업 서기 · 임업서기 · 시설서 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 서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위생서기 ·	<u>54</u> ·	<u>55</u> ·	+1
·	·	·	